

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. 6. 2 선고 2015가단2682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론 종결 2016. 5. 12

판결 선고 2016. 6. 2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공주시 C 임야 4? 191㎡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
부분 조립식 판넬 지붕 창고 12㎡ 및 같은 도면 표시 5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5의 각 점을
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시멘트블럭조함석지붕 단층주택 56㎡ 중 2/19지분을 각 철거하고,
나. 위 창고와 주택이 점유하고 있는 각 토지 중 2/19지분을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저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,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갑 제1,2, 5, 6, 7, 8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감정인 D의 측량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원고는 2015. 6. 18. 공주시 C 임야4,191㎡(이하 '이 사건 임야'라고 한다)를 매수하여 2015. 6. 24. 이 사건 임야에 관한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친 사실, 이 사건 임야에는 별지 감정도 표시 1, 2,3, 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조립식 판넬 지붕 창고 12㎡ 와 같은도면 표시 5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시멘트블럭조 함석지붕 단층주택 56㎡(위 창고와 주택을 합하여 '이 사건 주택 등'이라고 한다)이 각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되어 있는 사실, 이 사건 주택 등은 피고의 부친인 망 E이 매수한 것인데,망 E이 1994. 7. 30.경 사망함에 따라 망 E의 배우자 F, 자녀 피고와 G, H, I, J, K, L, M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,망 E의 상속인으로 이 사건 주택 등에 관하여 2/19지분을상속한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,이 사건 주택 등 중 피고의 상속지분인 2/19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 철거하고,이 사건 임야에서 이 사건 주택 등이각 점유하던 부분 중 2/19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2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,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도영오

별지